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6333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63334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9. 29 선고 2019가단10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혜경

피고, 피항소인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백근

변론 종결2021. 9. 30.

판결 선고2021. 10. 28.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9. 29. 선고 2019가단10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피고의 대표자"를 "피고 소속"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②"부터 8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계약서 초안(갑 제1호증)에는 매매단가로 기재된 금액 위에 수기로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6,000원, 5,000원, 5,500원 등 여러 개의 금액이 메모 내지 낙서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 중 어느 하나가 원·피고가 합의한 양파 매매단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수매단가'를 매매단가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문구나 전체 매매대금을 알 수 있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제1심판결 제4쪽 15행의 "④ 원고가"부터 제5쪽 2행의 "고려하면"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일반적으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농산물 판매계약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하는데, 이 사건 협의는 피고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 커피숍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동안 J조합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다가 번번이 어긋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J조합 밖에서 만나 계약을 협의하였다(2020. 9. 20.자 참고서면)'는 것으로 위 협의로 인하여 확정적인 계약 체결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양파 1만당 매매대금을

6,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의 수매단가를 1망당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1망당 최저 6,000원으로 정하고 K조합의 수매단가가 이보다 높으면 그 높은 가격에 의하도록 합의하였다'라고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⑥ 2019. 7. 6.자 녹취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D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다른 상인들에게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월요일(2019. 7. 8.) 아침 책임자 회의 전 추가로 5,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책임자 회의에서 말할 명분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피고 사이에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협의 후 D이 피고의 상무에게 계약조건을 보고하고 상무는 계약조건을 승인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2019. 7. 6.자 녹취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상무에게 원고와의 계약 조건 등 협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고 피고의 상무가 일단 진행을 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⑧ 원고는 2019. 7. 5. 계약금 중 일부로서 5,000,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이나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부동문자나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2019. 7. 5.자 5,000,000원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총액(360,000,000원)에 비추어 5,000,0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 7. 5. 송금한 5,000,000원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우선적으로 매매협상을 할 지위를 보장하는 가계약금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⑨ 2019. 7. 6.자 녹취록(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내가 오후에 정확히 딱 답을 내려 드릴게"라고 말하였고, D이 "그래, 그럼 뭐 하죠, 뭐 계약하죠, 뭐."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는 "아, 계약은 하는 건데", "이제 조율이 필요하니까는"이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협의 이후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와 D은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진민희

판사김민정

판사서경원